

Korean Tax Update

December 2017, Issue 42

[조세뉴스]

기획재정부, 2017 년도 세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보도자료]

'17.12.1(금) 및 12.2(토) 세입예산부수법률안 중 10 개 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

(*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주세법, 증권거래세법, 관세법,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또한, '17.12.5(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 개정안은 기획재정부 위원회 합의사항 등을 반영한 것으로서 대부분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임.

■ 2017 세법개정안 주요 수정내용

(1) 대기업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조정(법인세법 §13)

-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축소 : ('18 귀속) 70% → ('19 귀속) 60%

(2) 적격합병·분할 시 고용승계 사후관리 완화(법인법 §44 의 3, §46 의 3, §47)

- 고용승계 사후관리를 개별 근로자 유지에서 근로자 수 유지로 완화
 - 합병후 합병법인 근로자 수가 합병등기일 1개월 전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 합의 80% 미만인 경우
 - * 분할도 동일하게 근로자 수 80% 유지로 완화

(3) 법인세 최고 과표구간 조정(법인세법 §55①)

- 기업의 조세부담 완화를 위해 과세표준 3천억 초과 구간에 대하여 25%의 법인세율

(4) 간접투자기구 외국납부세액 환급한도 현행 유지(법인법 §57 의 2①)

- 해외간접투자 지원을 위해 간접투자기구 외국납부세액 환급한도를 현행한도인 국외원천소득의 14%로 유지

(5) 대기업 R&D 비용 세액공제율 조정(조특법 §10)

- 대기업 일반R&D 증가분 세액공제율을 25%로 축소함
-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6)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 신성장 R&D 세액공제율 인상(조특법 §10)

-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 세액공제율 25~40%*로 인상
 - * 25% + 최대15%{(신성장·원천R&D비용/매출액) x 3}
-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7) 엔젤투자 소득공제 공제율 상향 및 대상 확대(조특법 §16)

- 공제율 상향

현행		➔	수정안	
천 5 백만원 이하분	100%		3 천만원 이하분	100%
1 천 5 백만원 초과 5 천만원 이하분	50%		3 천만원 초과 5 천만원 이하분	70%
5 천만원 초과분	30%		5 천만원 초과분	30%

- 투자대상기업 추가: 투자 당시 공제가능한 벤처기업 등이 아니더라도 3년 이내* 이에 해당되게 되는 기업

* 투자 이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내

(8)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2천만원까지 비과세 신설(조특법 §16 의 2)

- 18.1.1. 이후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 (대상자) 벤처기업 임직원
 - (한도) 연간 2천만원
 - (적용기한) '20.12.31까지 부여받은 분

(9) 고용증대세제 지방 중소기업 우대 등(조특법 §29 의 7)

- 지방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공제금액 조정
- 고용증가시 1인당 연간 일정금액 공제

공제금액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수도권	지방		
상시근로자	700 만원	770 만원	450 만원	-
청년정규직, 장애인 등	1,000 만원	1,100 만원	700 만원	300 만원

(10)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기업 세제지원 확대 등(조특법 §30 의 2)

- (적용요건) '17.6.30.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18.12.31. 까지 정규직 전환시
- (공제금액) 전환인원 × 1인당 일정 금액*
 - * 중견기업 : 500→700만원
- (고용유지기간) 2년

(11)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72)

- 매출액 100억 초과하는 대규모 조합법인은 일반법인과 동일하게 세무조정 대규모 조합법인의 세무조정 부담 감안하여 조합법인 세무조정을 현행대로 유지

(12) 창업·벤처 기업 근로자의 우리사주조합 출자금 소득공제 확대(조특법 §88의 4)

- 벤처기업 등*의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자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상향조정
*벤처·창업 기업(조특법 §16①3)
 - (한도) 연간 1500만원
 - '18.1.1. 이후 출자한 금액부터 적용

(13) 협회장외시장(K-OTC)을 통한 소액주주의 양도소득 비과세(소득법 §94①)

- K-OTC(Korea Over The Counter :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법인 주식 거래시장) 활성화 지원을 위해 K-OTC를 통한 소액주주의 중소·중견기업 주식 양도소득은 비과세

(14)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소득법 §104①, 부칙 §1 3 호)

- 중소기업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시행시기 유예
 - 중소기업: '19.1.1. 이후 양도분
 - 중소기업 외: '18.1.1. 이후 양도분

(15)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확대(부가법 §35 등)

- 현행 발급체계를 유지하되, 발급사유 추가
 - 납세자의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는 경우 발급 허용

(16)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정지사유 추가(국기법 §28③)

-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체류하는 경우 해당 국외 체류 기간'을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정지사유로 추가
- '18.1.1. 이후 신고 또는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

(17) 탈세 제보 포상금 한도 상향 조정

- '18.1.1. 이후 자료를 제공하는 분부터 탈세 제보 포상금 한도를 30억원에서 40억원으로 상향

(18) 신고성실도 평가에 따른 세무조사 정기선정시 고려항목 명시

- 신고성실도 평가에 따른 조사 대상자 선정시 회계성실도 자료 등 고려
 - 과세자료, 세무정보 및 감사의견과 외부감사 실시내용 등 회계성실도 자료 등을 고려하도록 명시

기획재정부,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전문보기]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41 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함.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는 2017년 12월 21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도록 함.

(1) 개정이유

- 종교단체가 소속 종교관련종사자에게 지급한 종교인소득에 해당하는 비과세소득인 종교활동비를 종교단체의 지급명세서 제출 항목에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교인소득에 해당하는 비과세소득인 종교활동비를 지급명세서 제출 항목에 추가(안 제 214 조제 1 항제 1 호)

종교단체가 소속 종교관련종사자에 대하여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의결기구의 의결·승인 등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한 금액 및 물품을 종교단체의 지급명세서 제출 항목에 추가함.

국세청,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제출 제도, 이번 달에 첫 시행 [보도자료]

(개요) '16. 12.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다국적기업은 '18. 1. 2.(화)까지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이하 '통합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통합보고서는 개별기업보고서, 통합기업보고서, 국가별보고서의 총 3 종으로 구성되며, 다국적기업의 지배구조, 계열사 간 거래현황 등 정보를 상세하게 기재하게 되어 있음.

(제출 의무자) 다음의 다국적기업은 내·외국계 여부 및 주식·유한회사 등 회사형태에 관계없이 제출의무가 있음.

- 개별·통합기업보고서는 그룹 법인 간 연간 거래액 500 억 원, 매출액 1 천억 원 초과하는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 국가별보고서는 연결매출액이 1 조 원을 초과하는 다국적기업 그룹의 국내 최상위 지배기업
 - 연결매출액 7 억 5 천만 유로 초과 다국적기업 그룹의 최종 모회사가 정보교환 미 시행국에 소재하면, 국내 관계회사가 제출해야 함.

(사후관리) 국세청은 통합보고서를 내부 DB 로 구축, 향후 다국적기업에 대한 신고안내·세원관리에 적극 활용하고, 부실신고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할 계획임.

[예규·판례]

[판례 1] 외국법인 간 합병에 따라 100% 자회사인 피합병법인이 자산으로 보유하던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이 합병법인에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대상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함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5 두 1984 판결

- 내국법인의 경우에 구 법인세법(2005. 12. 31. 법률 제 7838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0 조 제 1 항, 제 4 항, 제 16 조 제 1 항 제 5 호, 제 2 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 19328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22 조 제 1 항, 제 14 조 제 1 항 제 1 호 가목, 다목은 합병에 따른 자산의 이전도 양도차익이 실현되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양도차익의 산정방법을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구 법인세법 제 44 조 제 1 항 제 1 호 및 제 2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피합병법인이 대가로 받은 주식의 액면가액을 양도대가로 의제함으로써 사실상 양도차익이 산출되지 않도록 하여 합병법인이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시점까지 그에 대한 과세를 이연하는 정책적 특례를 제공하고 있음. 그렇지만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제 93 조 제 10 호 가목 등에서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외국법인 사이의 합병에 따른 주식 등의 이전에 대하여 과세를 이연하는 정책적 특례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그리고 외국법인 사이의 합병에 따른 국내 자산의 이전을 내국법인 사이의 합병에 따른 국내 자산의 이전과 달리 양도차익이 실현되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을 합리적인 이유도 없음. 따라서 외국법인 사이의 합병에 따른 내국법인 발행주식의 이전은 양도차익이 실현되는 자산의 양도로서 구 법인세법 제 93 조 제 10 호 가목의 '주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며(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 두 7208 판결 참조), 이와 같이 보는 이상 합병법인이 합병 전에 피합병법인의 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며 또한 위 경우에 합병법인의 주식이나 합병교부금이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교부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임.

[판례 2] 취득자가 책임질 수 없는 장애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취득 후 30 일 이내에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지 못하였으나 그러한 장애가 해소되는 즉시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려는 의사가 명백한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음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 두 56681 판결

- 고급오락장에 대한 취득세 등 중과제도는 이른바 사치성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고급오락장의 취득으로 발현되는 높은 담세력을 근거로 이에 대하여 중과세함으로써 사치·낭비풍조를 억제하고 국가 전체적으로 한정된 자원을 보다 더 생산적인 분야에 투자하도록 유도함과 동시에 국민의 건전한 소비생활을 정착시키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음. 그러나 비록 취득 당시의 현황이 고급오락장이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취득 후 곧바로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이 예정된 경우에는, 사치·향락적 소비시설의 유통이 전제되지 아니하여 고급오

락장으로서 취득세 등을 중과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반영하여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 14475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3 조 제 5 항 제 4 호 단서를 두게 된 것임. 이러한 고급 오락장에 대한 취득세 등 중과세 규정의 입법취지와 이 사건 단서를 포함한 관련 규정의 체계 등을 종합하면, 고급오락장 취득 전후의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취득자가 취득 후 바로 고급오락장이 아닌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자 하였으나 책임질 수 없는 장애로 인하여 취득 후 30 일 이내에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지 못하였고, 그러한 장애가 해소되는 즉시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려는 의사가 명백한 경우라면,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함. 납세의무자인 취득자와 무관하거나 그에게 책임 지을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단서에서 정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게까지 일률적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고급오락장을 중과하는 본래의 입법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음.

[판례 3] 원고가 제품제작 설비를 갖추고 있었고, 원고의 직원이 재하도급 회사의 인력에 대하여 작업지시를 하는 등 원고의 책임과 감독 하에 제품을 제작·납품하였으므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됨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7 두 51495 판결

-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철도차량 부품 제조를 위하여 2013 년에 회전용접 JIG, 크레인, 용접기, 에어탱크 등 합계 260,659,000 원 상당의 기계장치 및 60,000,000 원 상당의 전기시설장치를 설치하고, 2014 년에는 23,000,000 원 상당의 호이스트 크레인을 설치하는 등 제조시설을 갖추었고, 대표이사 외에 3 명의 직원을 고용함. 원고는 발주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A 기업에 재하도급을 주었음. 원고는 철도차량 부품을 제작함에 있어 A 기업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A 기업 등의 작업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에서 원고가 제공한 설비, 원재료, 전력 등을 이용하여 원고의 작업지시 하에 철도차량 부품 제작 작업을 하도록 하였고, A 기업은 하도급대금으로 원고와 발주업체 사이의 원도급 대금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인건비 상당의 금액을 지급받음. 이와 같은 제작 과정에서 현대로템 주식회사에서 30 년 이상 근무하여 전동차 제작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원고의 직원은 A 기업의 작업자들에게 작업지시를 하는 등 현장을 관리·감독하였고, 현장에서 절단, 용접 작업 등을 직접 수행하면서 현장 주임으로 근무함.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A 기업으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았을 뿐 자신의 책임과 감독 하에 철도 차량 부품을 직접 제작하여 발주업체에 납품하였다고 할 것임(부산고등법원 2017. 6. 21. 선고 2016 누 12021 판결).

[심판례 1] 처분청의 물납재산 변경 요청에 따라 상속인들이 쟁점주식으로 물납한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 80 조의 2 제 1 항 제 1 호 사목의 해당주주등이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함

조심 2017 부 0308, 2017. 12. 11.

- 처분청은 물납재산 수납절차가 종료된 후인 2014.10.24.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인 청구법인의 자본금 분할비율(9:1)대로 물납 주식을 수납하였어야 함에도 분할법인 주식으로만 수납한 사실을 인지하고 상속인들에게 '물납한 비상장주식을 쟁점주식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상속인들은 처분청의 위 변경 요청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 71 조 제 1 항의 물납재산 변경 명령으로 보아 물납대상 재산을 쟁점주식으로 변경하여 물납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14.10.24. 상속인들에게 한 물납재산 변경 요청에 따라 상속인들이 쟁점주식을 물납한 행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 80 조의 2 제 1 항 제 1 호 사목의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주식 등을 처분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임. 따라서 처분청이 분할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분할신설법인인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의 1/2 이상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 그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법인세법」 제 46 조의 3 제 3 항에 따라 양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같은 법 제 46 조의 2 제 1 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심판례 2] 분양계약의 해제에 따른 손익귀속시기를 그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야 함

조심 2017 중 4185, 2017. 12. 7.

- 계속기업을 전제로 할 경우, 수분양자의 일부 분양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금액과의 차액은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에 반영하는 것이 재무정보의 신뢰성 및 법적 안정성, 조세행정의 복잡화 등을 방지할 수 있어 합리적인 점,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후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분양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사업 손익을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분양계약의 해제에 따른 손익의 귀속시기는 그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야 함.

[심판례 3] 대중골프장을 회원제 골프장으로 일부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원제 골프장으로 사업승인을 받은 것이 아닌 이상 취득세 중과대상인 회원제 골프장에 해당하지 않음

조심 2017 지 0158, 2017. 11. 21.

- 대중골프장을 회원제 골프장으로 일부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동 골프장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원제 골프장으로 사업승인을 받은 것이 아닌 이상 회원제 골프장 영업형태로 사용한 사실만으로 「지방세법」 제 13 조 제 5 항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대상인

골프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동 골프장의 토지인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을 취득세 중과세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움.

[심판례 4] 산업단지 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한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78 조 제 5 항 제 2 호의 추정요건에 해당함

조심 2017 지 0844, 2017. 11. 20.

-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쟁점법인과 현물출자계약을 작성하고 현물출자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현물출자한 대가로 쟁점법인의 주식을 교부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주식을 교부받으면 양자 간에는 대가관계에 있어 매각으로 볼 수 있는 점, 개인사업자인 청구인과 현물출자를 받은 쟁점법인은 별개의 권리의무 주체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쟁점법인에 현물출자한 것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취득세 추정대상임.

[심판례 5] 베트남에서 외국인계약자세로 원천징수·납부되었으나 쟁점용역을 제공한 사업연도를 경과하여 고정사업장으로 등록하고 외국법인세액을 신고·납부(원천징수·납부분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한 경우 이를 「법인세법」 제 57 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으로 보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조심 2017 중 3888, 2017. 11. 14.

- 당초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였으나 이를 등록하지 아니하여 외국인계약자세로 원천징수·납부하였다가 추후 고정사업장으로 등록하고 베트남 과세당국에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외국인 계약자세를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였다면 고정사업장과 관련한 법인세액을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해당 법인세액을 「법인세법」 제 57 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으로 보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예규 1] (질의 1) 조세특례제한법 §38 의 2 에 따른 과세이연 요건을 충족한 주식과 그 밖의 주식 중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과세이연 요건을 충족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질의 2) 양도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에서 과세이연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되는 것임. (질의 3) 지주회사 주식 양도 당시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338, 2017. 11. 28

- A 법인은 2003.7.1. 인적분할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여 A 법인의 내국인 주주였던 갑은 지주회사 주식을 취득하게 되었고, 2003.10.15. 갑은

보유 중인 A 법인의 주식과 B 법인의 주식을 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여 지주회사 주식을 추가로 취득한 후 해당 현물출자 주식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2003.12.31. 법률 제 7030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8 조의 2 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질의 1) 갑이 보유 중인 지주회사 주식 중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4.7. 대통령령 제 27978 호로 개정된 것) 제 35 조의 4 제 1 항에 따라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질의 2) 같은 날 A 법인의 주식과 B 법인의 주식을 현물출자하고 지주회사 주식을 취득한 후 해당 지주회사 주식 중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A 법인의 주식과 B 법인의 주식 보유비율대로 양도되었다고 보아 양도한 지주회사 주식의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질의 3) 양도하는 지주회사 주식에 적용되는 세율은 지주회사 주식 양도 시점에 지주회사 주식에 적용되는 「소득세법」 제 104 조제 1 항제 11 호에 따른 세율이 되는 것임.

[예규 2] 그룹 내 계열사들이 그룹통합멤버십 포인트 제도를 운영하면서 고객에게 포인트를 적립해 주고 향후 고객은 물품 구매 시 물품대금의 일부를 해당 포인트로 결제하며 각 계열사는 적립 및 사용된 포인트를 정산하는 경우 2017.3.31. 이전에 고객으로부터 결제받은 포인트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68, 2017. 11. 13.

- 질의회사를 포함한 그룹 내 계열사들이 그룹통합멤버십 포인트 제도를 운영하면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고객에게 포인트를 적립해 주고 향후 고객은 물품을 구매할 때 물품대금의 일부를 해당 포인트로 결제하며 각 계열사는 적립 및 사용된 포인트를 정산하는 경우에 있어서 2017.3.31. 이전에 고객으로부터 결제받은 포인트 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 제 29 조 제 5 항 제 1 호 및 구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 11873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3 조 제 2 항 제 1 호에 따라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예규 3]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사후관리 시 처분주식의 취득시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41, 2017.10.29

- 취득시기가 다른 자산 중 일부를 증여하는 경우 먼저 취득한 자산부터 먼저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취득시기가 동일한 자산 중 일부를 증여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보유 비율대로 양도 또는 증여되었다고 보는 것임.

[삼성 KPMG 조세본부 소식]

[불복] 공급가액이 과다하게 기재된 수입세금계산서에 대한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 관련

사업자가 수입한 재화에 대해 수입가격을 과다하게 신고하여 세관장으로부터 공급가액이 과다하게 기재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에 대해 과세관청이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조세불복을 통해 40 억원 상당의 가산세를 환급받음.

- Tax 본부 김성현 상무(02-2112-0958), 김경조 S.Manager(02-2112-3415)

[기고] 한국경제 머니, 차등배당, 절세 효과는 '덤' [기사보기]

Domestic Tax 2 본부 상속·증여 및 가업승계팀

정병수 상무(02-2112-7506), 박수진 S.Manager(02-2112-0724)

본 자료는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어떤 기업이나 개인의 특정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자료의 내용과 관련하여 의사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당 법인의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PMG 삼정회계법인

Tax Center of Excellence

kr-fmtaxtcoe@kr.kpmg.com